

스페인 외방선교회

회헌

마드리드
1989

소개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결실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개혁에 항구하여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IEME(스페인 외방선교회)는 총회들을 거듭하면서 교회 내에서의 그 입지와 카리스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점검하였습니다. 1983년에 반포된 교회법전의 적용을 포함해서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4차 총회는 교회내의 현행법과 IEME의 거의 한 세기 동안 걸어진 경험을 참작하면서 사도생활단의 틀에 맞춰 회헌을 작성하여 1988년 5월 12일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류복음화성에 제출하였고, 로마에서 제기한 몇 가지 의견을 반영한 후, 1989년 10월 18일에 인류복음화성의 승인을 얻어 오늘날 여러분에게 완성 본을 내놓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헌의 승인과 발간이 이루어진 금년에 우리는 헤라르도 비요타 신부가 설립한 Ultramar y Propaganda Fide(해외 포교) 신학원 개원 90주년과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의 서한 Quum te ex Urgellensi(역자 주: 1919년 4월 30일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스페인 북부 부르고스 대주교에게 보낸 사도적 서한으로서 그곳 신학원을 해외선교사 양성을 위해 남쪽 우르젤에서부터 북쪽 부르고스까지 망라하는 전국기관으로 수용한다는 내용. *cf. Acta Apostolicae Sedis. commentarium officiale Annus XI-Vol. XI (4 Lulii 1919. Num. 8. p. 267)*의 70주년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스페인 주교회의와 우리의 모든 주교님 한 분 한 분께서 받아들여주시고 지지해주시며 힘입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조망합니다.

이 회헌 제정은 우리의 카리스마와 우리가 갖는 교회와의 통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IEME의 구조적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우리 회 소속회원 각자가 시대의 징표와 선교사명의 도전에 보다 잘 응답하고자 팀과 그룹에 속해서 형제적 통교를 살아가며 참여하는 재속사제로서의 소명을 충만하게 구현할 힘을 증강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우리 회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각자의 생활과 말씀으로 실현하는 우리의 증거가 구세주이시며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항구히 선포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9년 12월 3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축일에 마드리드에서
총원

서문

1988년 5월 총회에서 작성된 회헌에 대한 성좌의 승인은 IEME의 한 세기에 달하는 발자취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IEME가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고 인류복음화성에서 주의 깊게 검토한 이 새로운 법규집을 통해서 본회는 우리 시대에 교구사제들의 고유한 선교성소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에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교구사제들의 고유한 선교성소는 교구사제라는 조건 하에 선교활동에 즉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자체를 심는 임무에”(선교교령 6항) 항구히 투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신앙 공동체들이 “만민들을 향한”(ad gentes) 선교를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물길이 열렸다는 점은 IEME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들과 무엇보다도 교구 주교님들에게도 기뻐할 일입니다.

이 회헌은 어느 한쪽도 손상됨 없이 교구사제이며 동시에 선교사이고자하는 IEME 회원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헌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구나 신생 교회나 여타 선교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동시에 스페인의 출신 교구에 대한 영구적인 유대를 드러냅니다.

교황 베네딕토 15세께서는, 70년 전 부르고스의 교구장 벤로크 대주교에게 이 신설 선교회를 맡기심으로써 IEME의 역사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본회가 스페인 주교단 형제 주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본회는 비록 그 본성상 포교성성(현재는 인류복음화성으로 개편됨)에 예속되지만, 헤라르도 비요타 신부가 바랐던 대로 재속사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르고스 대교구장 좌를 이어간 벤로크 대주교님의 후임자들은 교황님께서 위탁하신 바를 그대로 수행하였고 1961년까지 주교단에서 본회의 정신적 대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후 1978년에 스페인 주교회회의는 그 해에 열린 제30차 총회에서 IEME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선교사제들을 원소속의 교구에 입적시켰습니다. 이 법적 유대에 대한 인류복음화성의 승인은 1979년에 이루어

졌는데, 이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않은 채 본래의 모습을 재발견하면서 IEME에 증대한 역사적 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IEME의 사제들을 위한 주교님들과 여러 교구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래에 더욱 풍요로운 원조를 희망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구장 주교님들과 주교회의 선교위원회의 위원 주교님들께서는 미주지역에 수차례 사목방문을 하심으로써 IEME 회원 사제들을 그들 본연의 신원 즉 교구 소속 선교사로 인정하셨습니다.

분회와 회원들의 입지를 인정하는 이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색깔은 IEME 소속 각 사제가 자기 교구와 주교회의 선교위원회와 맺고 있는 우호적이고 돈독한 관계로 확고히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새 회헌은 이러한 최근 10년간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헌이 주교회의와 IEME의 더욱 친밀한 모습들을 키워 나가도록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심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선교성소는 스페인 교구사제들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회의 수세기에 걸친 역사는 사제들로 하여금 선교예로 부르시는 은총을 감지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신 이 은총을 새 회헌이 제기하는 ‘여기서 지금’(hic et nunc)이라는 극단적인 선교 성소로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셨으며, 온 누리의 복음화라는 엄청난 과업에 커다란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요 초대이며 기도입니다.

앙헬 수키아 추기경

목차

소개
승인 교령
서문
역사에 관한 서문

제1편: IEME의 정체성

- I. IEME의 본성과 목적
- II. 핵심 요지
- III.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선택과 여타의 특징들
 -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선택
 - 두 개의 지역교회에 속함
 - 한시성과 보조성
 - 사도적 삶의 형태
 - IEME의 후보성인들
- IV. 영성과 사도적 활동
- V. 출신교구와의 선교연대
- VI. 파견된 현장 교회들의 구성원이 됨
- VII. 교회들 간 통교의 매개체

제2편: 회원들

- I. IEME의 회원들과 합체(교회법전 용어) 등급
 - 기한부 합체
 - 확정적 합체
 - 협력회원
- II.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 III. 회원들의 양성
 - 초기 양성
 - 업무현장에서의 시작
 - 평생 양성

IV. 회에서 나감

윤허

퇴회

통교의 단절로 인한 퇴회

제명

제3편: IEME의 조직

I. 일반 규범

II. 팀

III. 그룹

IV. 선교회의 전반적인 통치

[A] 총원

[B] 총장

[C] 정기 총회

관할권

준비

대표성에 관한 규범

[D] 비정기 총회

[E] 자문회의

V. IEME와 스페인 주교회의의 유대

VI. IEME의 공통 업무

VII. 재산과 그 관리

[A] 기준

[B] IEME의 전체 관리

총회

총장과 그의 참사회

총 관리국장

[C] 그룹들의 관리

후기

I. 회헌에 대한 성실성

II. 과도기적 지위

역사에 관한 서문

기원

스페인 외방선교회는 스페인의 재속사제가 선교활동과 지역교회들 간의 협력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꼈던 헤라르도 비요타(1839~1906)라는 한 교구 사제의 발의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열망을 실행하기 위해 그는 1899년 10월 1일 부르고스에 Ultramar y Propaganda Fide (해외 포교) 신학원을 설립한다. 이는 해외선교나 비신자 전교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부르고스의 대주교에게 맡겨진다.¹⁾ 실제로는 해외선교 분야만 기능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에 몇몇 사제들을 파견하였다.

교황이 스페인 주교단에 위탁함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몸소 1919년 4월 30일에 부르고스의 대주교 후안 벤로크로 하여금 주교단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포교성성에 속한 선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는 “거룩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제” 헤라르도 비요타 신부가 “심었던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교활동에 헌신하라는 부름을 받은 스페인 재속사제 회원들을 위한 것이었다.²⁾

교황의 명에 따라 후안 벤로크 대주교는 1920년 12월 3일에 전국차원의 외방선교 신학교를 공식적으로 열었고, 바로 다음날 포교성성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교령에 서명했다.³⁾

법적 변천

1947년 6월 18일 포교성성의 결정으로 그 때까지 부르고스 대주교의 직접적인 관할권 아래 있던 외방선교 신학교가 ‘스페인 외방선교회’라는 이름 하에 서원 없는 공동생활단으로 그 법적 체계를 취하게 되었고,⁴⁾ 그 후 1960년 1월 8일에 회헌이 승인되었다.⁵⁾

1) 헤라르도 비요타 신부의 증언. 1896년 9월 21일.

2) 교황 베네딕토 15세. Carta pontificia *Quum te ex Urgellensi*, 부르고스 대주교에게 보낸 사도적 서한 (1919년 4월 30일).

3) 벤로크 대주교의 설립교령. 1920년 12월 4일.

4) 포교성성장관 추기경이 부르고스 대주교 루시아노 페레즈 플라테로에게 보낸 서한. 1947년 6월 18일.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 1979년 3월 23일에 IEME와 그에 동의하는 스페인 주교회의의 요청에 따라 포교성성은 회원들이 외방선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출신교구의 입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가하였다.⁶⁾ 이 결정은 1979년 12월 19일부터 24에 있는 스페인 주교회의 제32차 총회에서 수용되었고 지지를 받았다.

마침내 1983년 새 교회법전 반포와 1984년 5월 28일 포교성성의 선언에 발맞춰 스페인 외방선교회는 소속회원들의 출신교구 입적을 유지하게 하는 사도생활단이라는 법적 지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회헌에 반영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 IEME는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희망을 가지고 쇄신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5) 포교성성 교령. 1960년 1월 8일.

6) 포교성성장관 추기경이 IEME 총장 빈센테 아바드 신부에게 보낸 서한. 1979년 3월 23일.

제1편 IEME의 정체성

I. IEME의 본성과 목적

- 1 스페인 외방선교회는 교회의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하는 이들에게 본회에 가입한 스페인의 재속사제들과 사제지망생들로 구성된 사도생활단이다.

이 선교활동은 IEME 회원들이 자기의 출신지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백성들 안에서 구현한다.

a)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역 그리스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b)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미 존재하지만 미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선교교령 6항; 교회법 786조).

- 2 IEME의 또 다른 목적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사도적 활동을 보다 잘 구현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동반하며 돕는 것이다.
- 3 교황청 설립 선교회로서 인류복음화성에 예속되며 교회의 선교활동과 선교협력의 임무를 지닌다.
- 4 IEME의 회원들은 보편법에 따라 본회에 입적하여도 원칙적으로 출신교구의 입적을 유지한다(교회법 736조 1항).
- 5 입적한 회원들과 출신교구의 관계는 자신의 교구장 주교와 IEME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 동의서로 규정된다(교회법 738조 3항).

- 6 IEME는 교회법적으로도 세속법적으로도 법인격을 지닌다. 그 주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페레르 델 리오路 17번지이다.

II. 핵심 요지

- 7 IEME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회원들의 충정어린 신념 속에 항상 머물고 있는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a) 스페인 재속사제로서의 소속감.
 - b) 교회의 선교활동에 온전한 헌신
 - c) 사도적 형제애를 살아가면서 공통의 선교성소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한 상호간의 연대.

III.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선택과 여타의 특징들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선택

- 8 예수님처럼 IEME의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평화와 정의와 형제적 사랑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파견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활태도를 통해서 보잘 것 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참조: 루카 4,18; 마태 11, 25; 교회헌장 8항근; 사제교령 6항).

두 개의 지역교회에 속함

- 9 교구소속 재속사제인 IEME회원들은 선교활동에 투신하기 위해 출신교회를 떠나지만 그 곳과의 유대를 상실하지 않고 원 소속 교구의 사제단의 일원임을 유지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사목 교역을 수행하도록 파견된 지역교회에도 속하게 된다.

한시성과 보조성

- 10 IEME는 본회의 선교활동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초기 단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새로운 교회들이 온전히 성립되기 까지 즉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을 갖추어 복음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교회법 786조)만 그 활동을 국한하고 종료한다. 그리고 본회의 활동은 보조적이다. 선교사들은 본연의 선교활동을 완수하고 나면 제2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곳을 떠나 새로운 선교 캠프를 향해 나아간다.

사도적 삶의 형태

- 11 IEME의 선교사들의 삶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선교를 위한 것이다. 교구소속 재속사제로서 공통의 선교사명을 실현함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일치한다. 그들은 형제적 공동체 생활 안에서 애덕으로 연대하고 기도와 온전한 협력을 함으로써 형제적 일치를 이루며 직무를 실현한다. 본 회헌 63항과 65항에 언급된 바대로 하나의 팀을 이루고 그 팀에서 시작하여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한다. 이를 통하여 선교활동과 그에 따른 부차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과 복음화의 과업 수행에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IEME의 후보성인들

- 12 IEME는 후보성인으로 전 세계 선교의 후보이신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와 스페인 재속사제의 후보이신 아빌라의 성 요한을 공경한다.

IV. 영성과 사도적 활동

- 13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의 민족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분께서 주신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IEME의 모든 회원의 항구한 영적 열망이다.

아울러 이 영성은 선교에 동참하는 사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몇 가지 특별한 요지들을 포함한다.

- 14 (회원들은) 서품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께 축성된 사제로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주님의 신비를 거행하는 집전자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에 충실하고 사제직의 완성에 결부된 사목적 애덕의 실천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에 근면하게 투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성찬의 두 가지 식탁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성무일도를 통해서, 잦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모 공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권장하며 우리를 성령의 힘으로 예수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여타의 성화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삶에 자양분을 얻어야 한다(사제교령 14항; 교회법 276조).

- 15 (회원들은) 같은 성소어로 하나 되어 동참하는 사제들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형제적 통교의 삶을 영위한다. 그럼

으로써 본 회헌 11항에 언급했듯이 보다 잘 사명을 완수하고 복음을 증거 하게 된다(참조: 마르 6,7; 교회헌장 28항ㄴㄷ). 이러한 통교는 또한 함께 일하는 사제단의 일치된 열망과 그 그룹에 의해 조직된 공동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참조: 교회법 740조와 280조).

- 16 (회원들은) 다른 민족들과 문화에 투입되는 선교사로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필리 2,7) 구체적인 사회와 인간의 문화적 조건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분의 삶과 사명에 동참한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버리고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참조: 1코린 9,22),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기와 장소에서 선교성소에 삶 전체를 충실하게 내어 놓는다. 그럼으로써 말씀과 생활의 증거를 하여 자기가 대리하는 그리스도 신비의 풍요로움을 민족들에게 알린다(선교교령 10항과 24항).
- 17 **사람들과 민족들의 총체적인 해방:** “정의를 위해 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 선포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다.”(1971년 제2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총회문헌 세계 정의); 참조: 현대의 복음선교 31항). IEME 회원들은 교회와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선교과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사람들과 민족들의 총체적인 해방이 진행되는 일에 참여한다. 그런 현장에서 경험한 하느님 체험은 자기 영성의 샘이 되고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이 될 것이다(참조: 마태 25,31-46).
- 18 **선교활동:** 하느님나라를 위한 봉사에 대한 신념을 가진 자들로서 선교사들은, 그 신념이 사람들의 환희와 희망, 슬픔과 걱정을 나누기를 독려하는 지복의 영성에서만 우리나라 오는 것인 만큼, 자기의 생활과 업무 안에서 다음과 같은 태도들을 키워가

라는 부름을 듣는다.

- a) **관상:** 이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수행하면서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고,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에 맞들이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목소리에 비추어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 b) **성찰과 회개:** 이는 성령의 활동에 자기를 개방하여 보다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이 넉넉해지고 복음적으로 변화되면서 일상의 삶에서 나아갈 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 c) **순명:** 이는 천주 성부에 대해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과 형제들을 위한 봉사에 자신의 의지를 봉헌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정신으로 교회의 통교를 추구하며, IEME의 장상들과 주교들의 모든 법적 결정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선교교령 24항 ㄴ; 사제교령 15항 ㄴ).
- d) **청빈과 독신:** 이는 하느님 나라에 봉사함에 있어서 뿌리깊이 헌신하기 위한 기본 덕목으로서 하느님과의 일치의 샘이요, 자유와 사목의 풍요이며, 가난한 백성의 삶에 최대한으로 동반하는 길이다(참조: 사제교령 16항).
- e) **겸손:** 이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과 자신의 소임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시성을 상기하고 안정된 정착은 지역 교회에 넘기면서 자기의 능력은 봉사를 위한 것이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것

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 f) **희망과 기쁨**: 이는 분쟁과 좌절과 기대로 가득한 민족들의 삶의 여정 한 가운데서 선교사들로 하여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로서, 그 민족들이 악과 죄에 맞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는 기쁨의 증언자가 되게 한다.
- g) **자유와 대범함**: 이는 활기차고 심오한 교회의 통교 안에서 항상 예언자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림 받은 자신의 성소에 요청되는 덕목이다.
- h) **연대**: 이는 소임 현장에서 백성들과 팀과 그룹이 필요로 하는 바들을 신앙을 바탕으로 감지하고 그것에 맞추어 생활하도록 선교사들을 독려하는 요지이다.
- i) **내어줌과 자기를 비움**: 이는 선교사들이 인간다워지고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민족과 공동체에 동반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복음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복음화 과업 수행에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머무는 것이다.
- j) **대화**: 이는 다른 이들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면서 각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씨앗을 발견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 k) **교회일치 정신**: 이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일치를 열렬히 모색하면서 세상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V. 출신교구와의 선교연대

- 19 IEME는 서품을 통해 모든 교회들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하며 주교들의 협력자로서 온 누리에 대한 책무를 실천하도록 하느님께서 부르신 교구사제들 본연의 선교성소를 구현하기 위한 물길이라 하겠다(참조: 사제 교령 10항).
- 20 만민을 향한 이 선교성소를 구현하고자 IEME는 성좌로부터 교회법적 소명을 받는다.
- 21 한편 IEME 소속 선교사들은, 종신토록 선교에 몸 바치는 회원도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한 회원도, 자기의 선교 과업을 위해 자신을 양성해주고 동반해주는 소속교구를 통해서 이 소명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에 자신이 느끼는 선교책임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교구의 사제들에게는 자신이 교구소속 사제 본연의 삶의 방식을 살 것임을 알린다.
- 22 IEME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영구히 입적되어 있는 그들의 교구와의 구체적인 원조와 상호간의 봉사에 관한 이 중대한 관계는 본 회헌 5항에서 다룬 바 있는 상호간의 약속과 의무를 설정해 놓은 서면동의서를 통한 법적 표명에 드러난다.

VI. 파견된 현장 교회들의 구성원이 됨

- 23 IEME의 선교사들은 자기가 파견된 교회의 주교의 사목권에 직접적인 예속 하에, 그곳 사제단의 삶과 일에 동화되어 재속사제 본연의 모습으로 자신의 선교활동을 펼친다. 해당 교구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속한 그룹과 현지 교구장 간의 협약으로 관

계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 협약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에게 부여된 과업들이 IEME의 선교 카리스마와 사목적 선택에 부합하는 것이 되도록 보장한다.

- 24 재속사제로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교회가 충분히 성숙해지도록 그곳의 교구 사제를 상승시키는 데에 특별히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 25 본질적으로 선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는 그 태생부터 선교적이어야 하고 가난하고 빈약한 상태에서도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의 전령을 파견하기를 배워야 한다(참조: 선교교령 37항). IEME가 활동을 펼치는 지역 교회 내에서 이 특별하게 선교적인 재능을 자극하는 것이 IEME의 과제이기도하다.

VII. 교회들 간 통교의 매개체

- 26 출신교구와 유지하는 일치의 유대는 파견된 지역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들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교회들 간 통교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한다.
 - a) 그들의 선교활동은 폭넓은 과업으로 마주하는 선교지역 교회들에 대한 출신 교회들의 배려와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 b) 그들은 출신 교회들에 대해서는, 전체 교회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교회들 간의 최대의 연대와 통교를 필요로 하는 드라마틱한 문제들을 지닌 민족들이 살고 있는 선교지역 교회들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경이로움의 증언자가 된다.

- 27 이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출신교구와의 정서적이고 실무적인 연대가 활력을 띠게 하고 효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 a) 특히 고향 교구의 주교와 사제와 여타 사목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교환.
 - b) 기도와 지지를 통해 그리고 그 교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여타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표현되는 상호간의 연대.
 - c) 출신교구 주교의 방침과 그 교구 산하기관들의 조정에 따르면서 선교에 활력을 주는 기여.

제2편 회원들

I. IEME의 회원들과 합체(교회법전 용어) 등급

- 28 1) IEME는 선교에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를 원하며 맹세(수도자의 서원과 다른 다름)를 통하여 합체(incorporatio)한 사제들과 사제지망생들로 구성된다. 이 맹세는 본회에 직접 입적(incardinati) 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출신교구의 입적을 유지하는 이들도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경우 소속 교구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또한 IEME에는 협력회원들도 있다. 그들은 일정기간 동안만 선교와 생활양식에 참여하는 이들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본 회헌 3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29 IEME에로의 합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 a) 기한부 합체
 - b) 확정적 합체
- 30 기한부 합체는 지원자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장과 참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최소 1년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본회에 속하겠다는 맹세를 발하고 이루어진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총장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데 결코 그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기한부 합체의 맹세 양식은 다음과 같다.

나, ____, ____, 와 ____, 의 아들, ____, 교구의 신학생(혹은 ____, 교구에 입적된 사제는), (나의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스페인 외방선교회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동기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또한 나의 소속교구에 선교사명을 드러내고자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교회의 선교활동에 나를 봉헌할 것이며, 기한부 회원으로서 회헌을 성실히 준수하며 ____, 년간 이 선교회에 속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약속하고 맹세하오니,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이를 지키도록 저를 도우소서.

- 31 확정적 합체는 기한부 회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장과 참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다음, 선교에 일생을 바쳐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종신 맹세를 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확정적 합체의 맹세 양식은 다음과 같다.

나, ____, ____, 와 ____, 의 아들, ____, 교구의 신학생(혹은 ____, 교구에 입적된 사제는), 스페인 외방선교회 기한부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동기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나의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또한 나의 소속교구의 선교사명을 드러내고자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로 종신회원이 되어, (나의 입적을 ____, 교구에 유지하면서), 내 생애가 마감될 때까지 이 회에 속할 것이며 교회의 선교활동에 내 일생을 봉헌하겠습니다.

회헌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약속하고 맹세하오니,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이를 지키도록 저를 도우소서.

- 32 협력회원은 맹세를 통한 합체를 하지 않고 적어도 5년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선교의 삶을 살고자 자신을 봉헌하기를 원하는 교구사제들로서, 소속 주교의 서면 허가를 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장과 참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다. 그들은 IEME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향유하며 협약서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 33 협력회원들은 선교활동의 경력 5년이 지난 후, 소속 주교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과 참사회가 승인하면 종신 맹세를 발함으로써 정규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어도 5년 이상의 협력 활동이 기한부 합체를 대체한다.

II.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 34 IEME의 모든 회원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선출 투표권과 피선출 투표권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다만 회헌에 달리 규정한 모든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5 IEME는 선교성소를 실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나 타인들을 통해서, 회원들의 양성과 특히 질병을 앓고 있거나 허약해지거나 노쇠한 경우에 영적 지원과 일상의 물질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협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교사들이 입적되어 있는 교구의 협력으로도 이루어진다.
- 36 회원들은 본회가 제공하는 공동 주택과 편의를 관할권자에 의해 규정된 법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 37 선교현장이나 내지는 고국을 떠나서 일하는 IEME의 회원들은 관련 그룹의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상주 지역 내에서 누

릴 수 있는 연례휴가에 손상을 받지 않고 고국에 가서 정기적으로 휴가를 보낼 권리가 있다.

- 38 IEME의 모든 회원들은 회헌과 지침서의 규정들 그리고 여타의 법적인 사안들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와 각 회원들의 선익에 대한 연대 책임도 져야 한다.
- 39 IEME의 모든 회원들은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팀에 속해야 한다. 그 안에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총원에 유보된 사안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0 회원들은 자신의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재속사제로서 자기의 고유한 신분에 입각한 재물의 취득, 소유, 처리에 관해 소속그룹이 규정한 형식에 따라 개인적인 비용조달 부분을 제외하고, 관련 그룹에 헌납한다(참조: 교회법 282조와 286조).

III. 회원들의 양성

- 41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들인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충만하게 생활하고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내맡기고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경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징표들을 식별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기가 파견된 곳의 백성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자기와 문화가 다른 타민족들의 삶 안에 파고들수록 미완성이지만 완성될 수 있는 양성의 이 두 가지 측면을 평생에 걸쳐서 발전시켜야 한다.
- 42 IEME는 회원들과 지원자들이 부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러 나

아가기 전에는 물론이고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양성한다. 총원은 일반적으로 양성분과와 신학교담당 팀 그리고 그룹들의 양성담당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실현한다.

- 43 회원 각자는 스스로가 자기 양성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활력 있는 사목활동에 못지않게, 끊임없이 영성적 지성적 생활을 가꾸어 가면서 단단한 기초위에 자기 양성을 이루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초기 양성

- 44 IEME는 지원자들에게 선교업무의 관점에 부합한 준비를 제공할 것이다.
- 45 이에 대해서는 신학교담당 팀의 도움을 받아 신학교 교장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a) IEME에 합체하려고 지원하는 신학생들과 자기 교구들의 신학교들에서 과정을 밟는 신학생들의 양성을 수행하는 것.
 - b) 특히 신학생들과 교구사제들 중에서 선교성소의 증진시키는 것,
- 46 IEME에로의 기한부 합체에 앞서서, 모든 지원자는 1년 간 선교 준비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지원자의 선교성소를 식별하고 그것을 IEME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원자와 IEME간의 상호인식과 정서적 동화.

- b) 선교활동에 요청되는 고유한 지식과 소양과 태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개발.

47 이 법규는 협력회원에 지원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업무현장에서의 시작

- 48 모든 선교사는 업무현장에 도착하여 어떠한 책무도 맡기 전에 소속그룹의 삶과 업무에 동화되도록 그 나라와 지역교회의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익히는 데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각 그룹은 상황에 맞추어 이 착수 시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과 성격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평생 양성

- 49 선교사들은, 개인적인 독서와 교육과정 수강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지역 교회나 소속된 팀이나 그룹 혹은 전 선교회 차원에서 마련한 토론 및 연구 모임들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의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학지식과 사목지식과 그리고 여타의 학문적 지식들을 업데이트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 50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쉐신과 함께 일정한 햇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욱 광범위한 업데이트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그 외의 적절한 방식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쉐신이 필요하다.
- 51 소속 회원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룹들이 책임을 진다.

- 52 총원은 IEME의 다양한 과업들을 위해서 몇몇 회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IV. 회에서 나감

윤허

- 53 총장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고 관련 그룹의 조정자(코디네이터)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적 합체를 한 회원이 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윤허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그가 거주할 곳의 교구직권자의 동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교구에 입적된 사제의 경우는 그의 본교구장 주교의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 54 그가 나가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기간 중에 그는 IEME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윤허를 하면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선출 투표권도 피선출 투표권도, 경제적 권리와 의무도 보유하지 못한다.
- 55 윤허기간동안 본회는 본부의 기능을 통해서든 그가 속한 그룹의 담당 팀을 통해서든 그와의 접촉을 유지한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는 IEME에 온전히 복귀할지 아니면 본회를 떠나 어느 한 교구에 합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교구장 주교에게 독점적으로 예속된 소속교구가 있으면 그곳으로 복귀하면 된다. 본회와의 유대의 종료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퇴회

- 56 본회로부터의 자발적인 퇴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당한 사유를 전제로,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으로부터 합체 맹세에 대한 관면을 받아야하며 그 관면에 대해 교회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743조). 기한부 합체의 경우에 퇴회는 관면으로도 맹세 갱신의 포기로도 혹은 관할권자의 제명조치로도 성립된다.

통교의 단절로 인한 퇴회

- 57 만일 어느 회원이 본회와의 통교를 단절하여 총장이 참사회의 동의를 얻고 그의 소속그룹의 조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 충고를 두 차례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려기간 6개월이 지나도록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그의 권리가 박탈된다.
- 58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통교의 단절에 해당될 수 있다.
- a) 총원의 승인 없이 소임지 밖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때.
 - b) 선교현장에 머물면서 그룹 전체에 관여하지 않거나, IEME의 선교기능과 동떨어진 일을 할 때.
 - c) 본회나 보편법의 기본적인 범규들을 의도적이고 상습적 방식으로 거스르거나 꺾할 때.
- 59 만일 이러한 단절의 기간이 일 년 이상 연장되면 총장은 참사회와 함께 법적 절차를 충족하며 당사자의 확정적 퇴회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여라도 제명 교령은 공증문서로 발송하

여 성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제명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권자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제명

- 60 본회로부터의 의무적 제명은 보편법에 명시된 경우들과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다(참조: 교회법 746조와 694조 이하). 아울러 본 회헌 57항과 59항에 표현된 통교의 단절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제3편 IEME의 조직

I. 일반 규범

- 61 IEME의 조직과 다양한 구조 속에서의 권위 행사는 봉사 정신 안에서 그리고 선교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교와 협동과 보조성의 원리 안에서 영감을 얻는다.
- 62 IEME의 조직구조는 팀, 그룹, 전체 선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헌에 명시된 형식에 따라 운영된다.

II. 팀

- 63 팀은 그 안에서 개인적인 만남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선교성소를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교와 식별과 상호간의 도움을 나누게 되어 있는 기초공동체이다. 이는 총장의 관면이 없는 한, 적어도 세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비록 팀의 생활을 조정하는 지휘자가 있지만 모두가 공동 책임자들이다.
- 64 팀은, 본 회헌 69항c)에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교지의 필요사항들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그룹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라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선교지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분명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어느 경우에라도, 팀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빈번한 정례 회합을 계속 가져야 한다.

- 65 팀은 그룹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내부생활을 제외하고는, 현지 사제단의 다른 사제들에게 개방될 수 있다.

III. 그룹

- 66 그룹은 사목상의 이유와 지역특성에 의거해서, 상호부조와 IEME 본연의 삶과 업무 형태에 맞추어 모인 두 개나 그 이상의 팀으로 모습을 갖춘다. 그 규모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도 안 되며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만남을 어렵게 할 만큼 커도 안 된다. 그렇지만 특히 새로운 개척지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임시로 하나의 팀으로만 그 구성을 충당해도 무방하다.

- 67 다음 사항들이 그룹의 고유 업무이다.

- a) 팀들의 일치와 활력을 증진시키고 선교활동을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본 회헌에 따라 내규를 정하는 일.
- b) IEME의 회원들 중에서 그룹의 조정자를 선출하여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의 추인을 받는 일. 그룹이 선정한 두 명의 선교사들이 그 조정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 c) 그룹의 공통 업무에 종사할 인물들을 양성과 재정상에 하자가 없는 이들 중에서 선출하는 일.
- d) 교구의 계획과 IEME의 선택에 동조하며 구성원들의 사목 업무를 기획하고 점검하는 일(참조: 교회법 738조 2항).
- e) 구성원들의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하는 일.

- f) 새로운 선교지 수용이나 기존 선교지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일. 다만 본 회헌 79항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g) 해당 그룹에 의해 제정된 법규에 따라 피정과 휴식에도 이용하고 활동과 양성을 할 수 있는 집들 가운데에 공통 업무를 설정하고 활용하는 일.
 - h) 본 회헌 99항에 명시된 대로 IEME의 정신과 선택에 입각해서 해당 그룹의 재정 관련 계획을 세우는 일. 다만 공통 법규는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 l) 그들이 전개하는 선교활동에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 특히 일정 기간 사도적 활동의 경험을 쌓은 젊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당사자의 개인적 자질을 고려하여 전문 양성을 받도록 배려하는 일.
- 68 참가위원들 동의를 얻어 조정자와 그의 자문단이 재치권을 행사할 때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그룹의 회합을 소집하고 준비하고, 그룹에 위임된 결정사항들을 집행하는 일.
 - b) 그룹의 내규가 준수되도록 하는 일.
 - c) 총원과 그룹의 연결 역할.
 - d) 교회법에 따라(교회법 523조와 682조 1항), 새로운 선교사들의 사목적 임명에 동의를 하는 일과 발생할 수 있는 해임에 대해 결정을 하는 일(교회법 538조 2항과 682조 2항).

69 조정자 개인에게 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그룹 일치(consensus)의 원리요 상징으로서 행동하는 일과 선교사의 업무들 수행하다가 혹은 여타의 이유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각 구성원을 돕는 일.
- b) 현지 주교와 그 외의 권위자들 앞에서 그룹을 대표하는 일.
- c) 공통 업무에 종사하도록 그룹에 의해 선출된 팀들과 개인들에 관한 양성과 내규를 추진하는 일.
- d) 팀들 간의 통교를 도모하는 일.

70 양성 담당자에게 해당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들이 거룩한 학문이나 그와 연계된 분야와 사목 방식들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게 하는 발의들을 증진하고 조정하는 일. 이 업무를 위해서는 이미 받은 양성 교육을 완성시키는 데에 유용한 여러 날을 소요하는 연례 모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71 재정 담당자에게 해당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본 회헌(67항 h)에 명시된 법규를 따르면서, 본 회헌 103항의 총 관리국장에 대한 내용을 자기의 수준에서 집행하는 일.

72 조정자와 그의 참사회의 임기는 3년이며, 두 번째 발령에 의해 오직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가 소임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의 직무로부터 합법적으로 제외되거나 그 직무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조

정자의 경우: 본 회헌 67항 b)와 79항 a)에 의거해 선출된 후임 조정자 아직 없는 동안 IEME의 최고 선배 참사위원이 대행한다. 참사위원의 경우 다른 이를 선출할 권한이 해당 그룹에 있다.

73 한 그룹 내 체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 a) 어느 그룹에 한 번 등록되면 모든 선교사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면서 그 그룹 내에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
- b) 정당한 이유와 총원과 그룹의 동의가 있으면(그리고 출신 주교의 동의로 이어짐),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 채 3년 이내의 부재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부재기간 동안 해당 선교사가 보이게 될 자기의 상황과 문제들을 당사자와 소속그룹과 총원이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가능한 한 더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c) 만일 3년이 경과한 후 부재가 정당한 이유로 승인되어 지속되어야 한다면, 해당 선교사는 어느 그룹에도 소속됨 없이 총원에 직접적으로 예속되어야 한다.

IV. 본회의 전반적인 통치

[A] 총원

74 IEME의 총원은 본회의의 모든 회원들과 팀들과 그룹들의 통교의 중심이며 상징이다. 총원은 대표자로서 총장과 추가로 그의 참사회를 형성하는 네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75 총원은 확정적 합체를 한 회원들 가운데에서 본 회헌 80항에서 언급된 규정을 손상함 없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 76 총장이 무능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본회의 부총장 직무에 겸하여 그의 직무를 접수한다. 마찬가지로 선출 시 예정된 임기를 채우기 전에 총장의 직무가 중지되면,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무총장이 한시적으로 그의 직무를 접수한다. 이 이례적 선출은 확정적 합체를 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며 우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선거권은 총원에 상주하는 회원들에게 국한되며, 상대적 다 득표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당선된 이에게는 오직 5년을 채울 때까지만 그 직책이 유지된다.
- 77 참사위원들 중에 한 사람의 직무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총원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확정적 합체를 한 회원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5년 임기로 임명한다.
- 78 총원에 해당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모든 이 안에서 본연의 카리스마가 생동감 있고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
 - b) 총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본회의 활동을 계획하는 일.
- 79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에 해당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조정자들을 추인하고 그룹들의 내규를 승인하는 일.
 - b) 자기의 책무 디자인을 포함해서 IEME의 공통 업무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일. 다만 본 회헌 83항

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몸소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특별히 은퇴자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일.
- d) 본 회헌의 제1편과 66항에 명시된 대로 IEME의 본성과 정체성과 성격을 드러내는 기준을 감안하면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그룹의 설립 및 변경을 하거나 기존의 그룹을 폐지하는 일
- e) 그룹이 봉사하는 현장 내의 새로운 선교 협약들을 수용하는 일과 업무를 수행하는 교구들과 이미 체결했던 협약들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항상 예측하면서 그 종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
- f) 본 회헌 107항에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헌의 법규들과 총회의 결정과 지침을 해석하는 일.
- g) 기한부 합체로든 확정적 합체로든 새로운 회원들을 본회에 받아들이는 일.
- h) 본 회헌 53항부터 60항까지의 내용에 입각해서 회원들의 자발적 퇴회나 강제적 퇴회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일.
- l) 본 회헌 32항에 해당하는 협력사제들을 수용하는 일.
- j)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그룹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특정 그룹에 등록시키는 일.
- k) 해마다 예산과 총대차대조표를 승인하는 일.

- l) 해결을 위해서는 성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 투표를 통해 개입하는 일.
- m) 그룹들이 일하고 있는 교구들과 체결하는 협약을 승인하는 일.

[B] 총장

- 80 총장은 IEME의 회원들과 산하기관들에 대해 직권자의 권한을 향유하는데, 35세의 연령을 채워야하고 본회에 5년 이상 확정적 합체를 했어야 한다. 그의 임기는 5년이며 단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81 본 회헌 79항에 언급된바 외에도 총장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 a) 공식적으로 선교회를 대표하는 일.
 - b) 카리스마에 대한 성실함을 확고히 하고 자기의 모든 회원들 사이에 일치와 통교를 키워나가는 일.
 - c) 총원의 과업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일.
 - d) 총원의 다른 구성원의 도움을 받거나 대신 보내서 본회의 모든 팀과 그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
 - e) 본회의 일상생활에 관해서도 회원들의 탈회나 IEME의 산하기관 밖에서의 생활에 관해서도 법이 부여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일.

- f) 보편법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면서 몸소 혹은 대리인을 시켜서 이례적 관리 행위에 대한 계약에 서명하는 일.

[C] 정기 총회

- 82 1. 총원에 의해서 소집되는 정기총회는 IEME의 내부 최고 권위가 모여서 주관하는 정례 회합이다. 이 총회는 매 5년마다 거행된다.
- 2. 총회의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총원의 구성원들과 신학교 교장, 그리고 본 회원 86항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관할권

- 83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모인다.
 - a) 민족들과 본회가 관심을 갖는 업무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보다 충만한 응답을 주기 위하여 IEME의 복음화 업무, 개인들의 상황, 모든 수준의 팀들과 그룹들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는 일.
 - b) 법과 본 회헌 107항에서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서 필요한 방식을 동원해서 IEME의 법규들을 실행하는 일.
 - c) 총장과 사무총장을 지명하면서, 혹은 원의에 따라 나머지 참사위원들 중에 여타의 직무를 부과하면서, 총원을 선출하는 일.

- d) 차기 정기총회까지 5년간의 기간을 위한 노선과 우선 과제를 선정하는 일.

준비

- 84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이 거행하기 일 년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데, 그는 그룹들의 조언을 들은 후 그 준비 방식을 설정한다.
- 85 총회가 소집되면 총원은 선출 투표권과 피선출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회원들과 협력회원들의 공식 명부를 발송한다. 이 명부를 가지고 대표성에 관한 법규에 따라 대표자들과 그들의 보조자(대표자의 유고시 그 자리를 채우는 보충역)들이 선출된다.

대표성에 관한 규범

- 86 대표성의 효력을 위해서는 :
 - a) 합법적으로 설립된 각 그룹이 비밀 투표로 자기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와 보조자를 선출한다.
 - b) 14명이나 그 이하로 구성된 각 그룹은 한 명의 대표자와 그의 보조자를 선출한다. 15명에서 24명 사이의 인원으로 구성된 그룹은 두 명의 대표자를, 25명에서 34명의 그룹은 세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이런 식(열 명 단위로 피선 인원이 한 명씩 증가함)으로 그 다음 규모로 이어진다.
 - c) 스페인에 머무는 은퇴자들과 환자들의 그룹은 24명이나 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25명에서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그룹에서는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하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규모로 이어진다.

- d) 어느 그룹에도 등록되지 않고 총원에 직접적으로 예속된 회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들이 24명이나 그 이하의 인원을 위해서는 한 명의 대표자와 그의 보조자를 선출하고, 25명에서 30명에 대해서는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하며, 이런 식으로 다음 규모로 이어진다.
- e) 법에 의해 그룹에 종사하지 않고 IEME의 공통 업무에 배속된 회원들의 경우는 출신 그룹에서 투표한다.
- f) 협력회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들 가운데 한 명을 대표자로 선출하는데 그는 본회의 내부생활에 관한 의제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나머지 모든 의제에 개입할 수 있다.

[D] 비정기 총회

- 87 비정기 총회는 중대하고 다급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이, 자신의 발의로 혹은 회원 사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정기 총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잡혀 있는 시기가 아닌 때에 소집하는 것이다.
- 88 비정기 총회의 위원들은 심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총원의 구성원들과 그룹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각 그룹의 조정자로 구성된다.
- 89 비정기 총회가 모이면, IEME의 내부 최고 권위가 총회 소집의 계기가 된 사안들을 다루며 주관한다.

[E] 자문회의

- 90 회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개최 시기가 적절하여 실시하는 자문회의의 거행은 어느 경우에도 보편법의 방침에 맞추어야 한다.

V. IEME와 스페인 주교회의의 유대

- 91 IEME는 설립에서부터 스페인 주교단의 사목적 배려에 의존하고 있다. 스페인의 교구들에 입적된 교구사제들로 구성되면서 이는 스페인 교회의 교구소속 재속사제의 선교사명을 표명하는 것이 되었다(참조: 선교교령 38 바).
- 92 따라서 IEME는 스페인 주교회의와 유대를 유지고 있으며, 주교단은 본회를 위하여 배려를 베풀어 인류복음화성에 대한 법적인 약속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IEME 장상들의 내부 통치에 관한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93 IEME의 스페인 주교회의와의 관계는 다음을 바탕으로 규정된다.

1) IEME 측에서는

- a) 총장을 통해서 스페인 주교회의 총회에 해마다 연례운영보고서를 제출한다.
- b) 지원자들과 회원들의 양성에 관한 주교회의의 의견을 구한다.

- c) 새로운 선교 캠프를 여는 것에 대한 주교회의에 의견을 구한다.
- d) 교구사제와 신학생들 가운데에 선교의식을 양성하는 일에 협력한다.

2) 인류복음화성의 지침에 입각하여 주교회의 측에서는

- a) IEME를 교구소속 재속사제들의 선교활동을 위한 스페인 교회의 물길로 인정한다.
- b)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IEME를 지원한다.
- c) 해마다 IEME의 운영을 평가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IEME의 주교회의의 관점을 대화틀통 해 제공한다.
- d) IEME의 양성 계획과 새로운 선교 캠프 개설 등에 관하여 자문회의들을 하면서 적절하다고 믿어지면 의견과 조언을 한다.
- e) IEME의 총회 안에서 주교회의 의장은, 혹은 그의 대리인이, 신임 총장이 자기의 직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발하는 신앙 선서가 있는(참조: 교회법 933조 8항) 미사성제를 집전한다.

VI. IEME의 공통 업무

- 94 IEME는 공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페인에 몇몇 회원들을 배치한다. 공통 업무라 함은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선교사들에게 대한 관심과 협동과 같이 IEME의 유지를 지향한 활동들과 과제들을 의미한다.
- 95 공통 업무에 발령을 받은 회원들은, 총원에 직접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출신 그룹에 소속을 지속한다.

IEME의 모든 선교사들은 앞서 말한 공통 업무에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룹들은, 총원과의 대화를 전제로, 이 업무를 위해 요청되는 인물들을 추천해야 한다.

- 96 IEME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 업무 부서를 배려한다.
- a) 사무총장이 조정하는 사무처.
 - b) 담당 부서장에 의해 조정되는 양성부.
 - c) 담당 부서장에 의해 조정되는 홍보 및 선교증진부.
 - d) 총관리국장에 의해 조정되는 전체 관리부.
 - e) 은퇴자와 환자 지원부. 그들을 위한 IEME의 집도 제공한다.
 - f) IEME의 본부, 양성 센터, 입회업무부.

g) 출판부서와 도서관

97 이모든 업무들은 각기 해당 권위자가 설정한 규정에 의해 수행된다.

VII. 재산과 그 관리

98 IEME는 법인으로서 보편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고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다.

[A] 기준

99 IEME를 형성하는 재산은 다음의 기준에 맞춰 선교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a) 사목우선: 이 기준으로 인해 모든 수단들은 복음화 업무에 동원된다.
- b) 복음적 청빈: 이는 더욱 가난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되신”(2코린 8,9) 것처럼.
- c) 재산의 공동소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사도 2,45). 생명과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통교의 표징이 된다.
- d) 연대: 이는 IEME 안에서 서로서로 염려하는 삶의 표현이며 정의롭고 형제애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우리들의 약속이다.

- e) 보조성: 비록 선교사 각자와 그룹이 자생력이 있을지라도, IEME는 그룹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교사들을 도울 것이다.
- f) 책임: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g) 보고: 재정 상태를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총원은 모든 회원들에게 그리고 그룹들은 총원에 그렇게 해야 한다.

[B] IEME의 전체 관리

- 100 IEME은 총회와 총장과 그의 참사회 그리고 총 관리국장에 의해서 경제적 재화의 운영과 관리를 받는다.
- 101 총회는 법에 따라 IEME의 공동재산에 최고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IEME를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을 설계하고 총회를 통해 보고된 본회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 102 총장과 그의 참사회는, 총회의 지침을 따르면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동의 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나 법적협상에는 오로지 총장이나 그의 대리자만이 본회를 대표한다.
- 103 총관리국장은 총장의 지휘 아래, 본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규와 교회법과 이 분야에 관해 준용해야 할 세속법에 입각해서 IEME의 재산을 관리한다. 그의 고유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통상적 관리행위를 수행하고 IEME의 기금이 수익성과 올

바른 사용에 맞게 보관되도록 힘쓴다.

- b) 이례적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편법에 제정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특히 교회법 1277조와 계약에 관련해서는 1291조~1297조). 이례적 관리행위라 함은 세습 자산에 대한 중대한 형태로 변동하거나 설정하는 일로서, 부동산의 매입, 임대, 양도, 상속 재산의 수용이나 거절, 건물의 신축, 수급과 규모가 큰 채무의 지불, 더 일반적으로 사물의 통상적인 유지와 기능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비용들이 이에 해당된다.
- c) 예산과 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원의 승인을 받고 두 가지의 요약본을 그룹들에 송부한다.
- d) 매년의 예산과 총대차대조표를 감안하여 IEME의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서 내지는 리포트를 총장과 그의 참사회의 검사필을 득한 후 총회에 제출한다.
- e) 총장과 그의 참사회가 위임하는 여타의 권한들을 행사한다.

[C] 그룹들의 관리

- 104 각 그룹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 채 참여하는 경제적 일치를 형성한다.
- 105 그룹의 조정자와 그의 참사회는 보편법과 IEME의 지침과 그룹의 법규에 따라 그룹의 재산을 관리하고 선교사들의 경제와 관련된 대상물을 돌본다,

- 106 각 그룹에는 조정자의 지휘 아래 회계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해당 그룹의 재무 행위의 집행자가 될 것이다.

후기

I. 회헌에 대한 성실성

- 107 IEME의 모든 회원들은 큰 호의를 가지고 이 회헌을 간직해야 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 회헌의 법규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변경도 오직 성좌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II. 과도기적 지위

- 108 활동 보조 선교사들은 사제도 아니고 성품직무 지망생도 아닌 회원들로서 본회에 확정적 합체를 한 이들이다. 그들은 또한 IEME의 종신 회원들이며, 비록 IEME가 오직 사제와 사제 지망생들의 선교회이기를 선택했지만, 합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총체적으로 보유한다.